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9-753호

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

우리 구 금호동1가 127-15번지 일대 금호제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용검사가 완료됨에 따라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「지적업무처리규정」 제8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로 시행함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7월 11일

성 동 구 청 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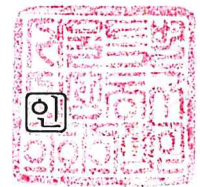
1. 사 업 명: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[이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]
2. 사업시행자: 금호제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3. 사 업 위 치: 성동구 금호동1가 127-15번지 일대
4. 종전의 지적공부 및 새로이 시행할 지적공부 내역

종전의 지적공부(폐쇄)					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(확정)				
동명	지 번	지목(필자수)	면적(m ²)	지 적 공 부	동명	지번	지목	면적(m ²)	지 적 공 부
금호동 1가	127-15 외 554필지	대(496) 도로(38) 구거(5) 수용지(15) 종교용지(1)	50,495.5 6241.1 189 2,015 561	- 전산토지대장 554매 - 전산임야대장 1매 - 지적도 1,200 도면일부 - 지적도 3,000 도 면일부	금호 동1 가	1823	대	48623.9	- 전산토지대장 10매 - 지적도(전산화일) - 경계점좌표등록부 10매
						1824	대	2891.3	
						1830	종교용지	853.2	
						1828	대	365	
						1832	도로	369.5	
						1831	도로	228.9	
						1829	도로	96.5	
						1825	도로	1809.4	
						1826	도로	416.3	
						1827	공원	3990	
합계	555필지		59,501.6		10필지			59,644	면적 142.4m ² 증가

5. 공고기간: 2019. 7. 11 ~ 2019. 7. 25 (14일 이상)
6. 열람장소: 성동구청 토지관리과 (전화: 2286-5380~3)
[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구청 본관2층]
7. 알림사항: 종전의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의 시행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열람장소로 연락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
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
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



2019년 7월 11일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(2019. 2. 14.)의 “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”에 따라 우리 구 회의진행 운영상 명문화 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여 의장단 선출시기 및 임기를 명확히 하였고, 최근의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의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석 배정 방법 반영(안 제3조제2항)

나. 후반기 의장단 선출시기 명확화(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, 제7항)

다. 의장단 임기 명확화(안 제7조제2항~제3항)

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규칙 제14호

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지역선거구 순서”를 “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·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고,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 이내에 차기 의장·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.

② 의장·부의장 선거의 직무대행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,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제4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의”를 각각 “제3항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4항”으로, “다선의원을, 다선의원”을 “최다선의원을, 최다선의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1항부터 제3항”을 “제3항부터 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반기 의장의 임기 만료일 전 5일 이내의 의장·부의장의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 수행은 법 제54조를 적용한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총선거 후

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

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의석배정) ① (생략)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 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<u>지역선거구</u> <u>순서</u> 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.	제3조(의석배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지역선거구</u> <u>및 비례대표 순서</u> -----.
제6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<신 설>	제6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① <u>지</u> <u>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</u> <u>선출하는 의장·부의장 선거는 최</u> <u>초 집회일에 실시하고, 처음 선출</u> <u>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</u> <u>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</u> <u>5일 이내에 차기 의장·부의장 선</u> <u>거를 실시한다.</u>
<신 설>	② <u>의장·부의장 선거의 직무대행</u> <u>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,</u> <u>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</u> <u>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</u> <u>한다.</u>
①·② (생략)	③·④ (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)
② <u>제1항의</u>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<u>제1항의</u>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 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 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	④ <u>제3항의</u> ----- ----- <u>제3항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현 행	개 정 안
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<u>다선의원을, 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</u>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. <u><신 설></u>	----- -----. ⑤ 제4항----- ----- <u>최다선의원을, 최다선의원</u>----- -----. ⑥ ----- ----- 제3항부터 제5항----- -----. ⑦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반기 의장의 임기 만료일 전 5일 이내의 의장·부의장의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 수행은 법 제54조를 적용한다.
제7조(의장·부의장의 임기) ① (생략) ② <u>의원 총선거 후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.</u> <u><신 설></u>	제7조(의장·부의장의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</u> ③ <u>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u>